

고용보험 기획조사로 부정수급자 218명(23억7천만원) 적발

-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이직 또는 육아휴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정수급한 사례 등 적발·엄벌
- '23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원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을 적발*했다.

* <붙임> 적발사례 ①~② 참조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 <붙임> 적발사례 ③~④ 참조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을 적발**했다.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자가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과 동일관련 사업주는 지원제외

** <붙임> 적발사례 ⑤~⑥ 참조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

**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을 받았음에도 해당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수령

작년에는 이번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7368)
		담당자	사무관	고복현 (044-202-7349)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① (충남 거주 ㄱ씨, ㄴ씨) ㄱ씨와 ㄴ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술수를 받아들여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권고사직으로 허위로 상실신고 하자, 실업급여를 신청함
 - 재취업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약 9개월간 11회 실업인정을 받아 2명이 총 32백만원을 부정수급함
- ② (전북 거주 ㄷ씨) ㄷ씨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모친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약 16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됨
 - ㄷ씨는 두차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각 5개월간 6회 실업인정을 받아 총 17백만원 부정수급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례**

- ③ (부산 거주 ㄹ씨) ㄹ씨는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실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본인이 35백만원을 부정수급하고,
 -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하여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배우자가 31백만원을 부정수급함
- ④ (경북 소재 ㄱ사업장) 사업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촌동생에 대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하여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여 사촌동생이 24백만원을 부정수급하고,
 - 허위근로자인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누나를 위장고용한 후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친누나가 11백만원을 부정수급함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례

⑤ (서울 소재 ㄴ사업장) 사업주는 본인이 운영하는 ㄴ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1명,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한 근로자 3명,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지원제외* 되는 사업주의 형 및 숙부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 4명 등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총 8명에 대해,

－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77백만원을 부정수급함

* (지원제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거나, 3개월 이내 이직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됨

** (밀접한 관련성) 사업주의 형은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숙부 사업장의 4대보험 업무를 ㄴ사업장의 사업주가 처리하고 있음

⑥ (경기 소재 ㄸ사업장) 사업주는 동생이 대표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고, ㄸ사업장의 4대보험 업무를 사업주의 동생이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ㄸ사업장의 사업주는 동생이 운영하는 학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관련 사업주*에 해당함

－ 그러므로 동생의 학원에서 이직한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학원에서 이직한 5명을 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48백만원을 부정수급함

* (관련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등